

참/여/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 796-8364, Fax: 793-4745, Hitel/Pc-ServeID: SOPA21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내 용: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성명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난 1월말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사법개혁을 중심 과제로 내세운 이래 이 문제는 바야흐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변호사의 과다수임료와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부정적 폐해들이 집중적 비판을 받았고, 언론도 사법개혁 과제를 무게있게 취급하였습니다. 소수에 의해 독과점화된 사법구조가 더 이상 개혁의 무풍지대일 수 없다는데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수단으로 도입되어 권력의 전횡앞에 왜곡되고 훼손된 근대사법 100주년을 되돌아 볼 때 사법개혁의 과제는 기존 사법제도에 대한 총체적 반성과 새로운 사법의 틀을 재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법제도와 법률가가 병들어 있고 기형화되어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개혁의 수준은 몇가지 제도만을 고치는 것으로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실로 총체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최근 현실론을 바탕으로 전반적 개혁에 희의를 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지자체 정국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맞물려 혼들리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결정자의 결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표류된 채, 법학교육체제를 둘러싼 정부와 사법부내의 이견을 이유로 해서 사법개혁 자체를 미루려는 움직임은 가히 문민정부의 개혁의지 전반에 대한 또 한번의 국민적 실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는 개혁논의의 막바지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사법의 주체는 법조인이기 이전에 국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생산자 주권에 못지않게 소비자 주권이 중요하다는 것이 더욱 더 강조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법의 궁극적 주인이 국민이라 할 때, 사법은 더 이상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주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법서비스는 또 더 이상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로 따져야 할 문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같은 인식을 확고히 하지 않고는 개혁방향은 매순간 표류하기 마련입니다.

국민에게 사법이 고통을 연상시키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서 개혁이 마무리지어져야 합니다.

첫째, 사법영역에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사법이용과 사법에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야 한다.

셋째,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고 친절하게 받을 국민의 권리가 사법제도 속에서 일상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위와 같은 전제를 도외시한 채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법원, 검찰의 개혁 등 사법개혁의 핵심적 과제는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채 법조인 수와 법학교육의 개편 등의 문제에서부터 개혁의지가 실종될 조짐이 보이는 것은 진정한 사법개혁을 기대해 온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의 개혁 문제 역시 전면적인 개혁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훌륭한 법조인은 어떻게든 시험만 붙으면 된다는 풍토에서 나올 수는 없으며, 법조인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은 정상적인 교육의 산물임을 분명히 한 바탕에서 현상유지적, 고식적 대응방안이 아닌 총체적 법학교육개혁방안이 강구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법시험은 현재 일종의 병목에 해당하는 만큼, 그 병목은 일단 넓혀야 합니다. 그러나 법조인수를 충분히 늘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문성과 봉사정신이 몸에 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제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법시험제도나 교육제도에 관한 논의는 결코 이해관계나 '집단간의 힘겨루기'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흔들려도 안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사법개혁의 논의가 소위 '밥그릇

'싸움'이나 '집단이기주의'의 차원으로 변질된다면 이는 정책결정자나 법 종사자 모두가 크게 부끄러워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사법시험제도나 법학교육체제의 도입은 법조인과 법학교수 모두에게 커다란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법조인의 경우 수의 중대로 인한 치열한 경쟁체제속에 놓이게 될 것이며, 교수의 경우 교수방법을 바꾸어야 하고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기관안에 실무가와 학자가 공존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불편과 상호조정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체제로는 충실한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요원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 제도의 운영과 감독에 있어서 충실을 기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요청에 부응해 나갈 수 있다면 그같은 불편과 도전에 진취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법개혁이 주춤거림이 없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 현상유지적이고 고식적인 방안이 아닌 획기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마무리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에서 애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공청회도 예 정대로 실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개혁이나 적절한 시기가 있는 법이며, 사법의 문제점에 대해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고 정략적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 지금이 가장 적기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끈다고 하여 더 좋은 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집중적인 의견수렴과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개혁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법의 다음 한 세기의 기틀을 위한 정책결정자의 사심없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1995. 4. 24.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 은 정 (이화여대, 법학교수)